

의안번호	2217240
의 퇴 인	이용우의원
회 답 일	2026.3.20.
추계번호	26D1219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공소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둠 - 공소청의 위치와 지역공소청 및 지청의 설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각급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름	의무규정
2	안 제11조(공소청장)	- 공소청에 공소청장을 두며, 「대한민국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봄 - 공소청장의 대우는 차관의 예에 따름	의무규정
3	안 제12조 ~안 제14조(차장 등)	- 공소청에 차장을 두며, 검사로 보함 - 공소청에 공소청 검사를 둠 - 공소청에 공소연구관을 둠	의무규정
4	안 제15조(직제)	- 공소청에 부와 사무국을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사무국 및 과의 설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그 밖에 직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무규정
5	안 제16조 ~안 제18조(지역공소청장 등)	- 지역공소청에 지역공소청장을 두고, 지청에 지청장을 두며, 지역공소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차장을 둠	의무규정
6	안 제19조(직제)	- 지역공소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무규정
7	안 제24조(공소청장후보추천위원회)	- 법무부에 공소청장추천위원회를 두고,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공소청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의무규정
8	안 제25조(공소청인사위원회)	- 검사의 임용, 보직 전보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공소청인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의무규정
9	안 제27조(정원 및 보수)	-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정원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함	의무규정
10	안 제30조(검사 적격심사)	- 검사에 대하여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하도록 하고, 검사 적격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위원 9명으로 구성된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둠	의무규정
11	안 제37조(공소청 직원)	- 공소청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두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무규정
12	안 제44조(기소영장심의회)	- 기소 및 불기소와 영장청구 등에 관한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소청 및 지역공소청에 기소영장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3	안 제45조(공소청 감찰관)	-법무부 소속으로 감찰관을 두며, 공소청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함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공소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1조(공소청장)	
3	안 제12조 ~안 제14조(차장 등)	
4	안 제15조(직제)	
5	안 제16조 ~안 제18조(지역공소청장 등)	
6	안 제19조(직제)	
7	안 제24조(공소청장후보추천위원회)	
8	안 제25조(공소청인사위원회)	
9	안 제27조(정원 및 보수)	
10	안 제30조(검사 적격심사)	
11	안 제37조(공소청 직원)	
12	안 제44조(기소영장심의위원회)	
13	안 제45조(공소청 감찰관)	

2. 상세 사유

□ 공소청, 지역공소청 및 지청의 직제(안 제15조, 제19조)

- 공소청에 부와 사무국을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두며, 지역공소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도록 규정하여 기존 검찰청 조직 재설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다만, 제정안이 공소청, 지역공소청 및 지청의 분장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조직구조, 분장사무 및 조직 재설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공소청 및 지역공소청에 기소영장심의위원회 설치(안 제44조)

- 공소청 및 지역공소청에 기소 및 불기소, 영장청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소영장심의회를 두도록 하여, 심의회 외부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및 심의회 사무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참고로, 2026년 기준 위원회 민간위원의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은 30만원¹⁾임
- 다만, 기소영장심의위원회는 기소 및 불기소, 영장청구의 적정성을 심의하는데, 이에 따른 연간 회의 개최 횟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 또한, 기소영장심의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소영장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 공소청 설치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는 공소청 설치 법안 제정 이후 기관 구성에 관한 핵심 사항들이 정해지면 공소청의 조직 및 인력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공소청 관련 예산은 현재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으나 2026년도 검찰청 예산을 활용하고 필요시 예비비

1)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1일당 20만원을 지급하되,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10만원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를 편성하겠다는 입장임

- 참고로, 2026년 검찰청 예산은 1조 2,893억원²⁾이며, 정부 예비비편성액은 4조원³⁾임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상욱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상욱	02-6788-4673	flyhigh@assembly.go.kr

2) “검찰운영(1333)” 단위사업에 138,187백만원, “검찰업무정보화(1334)” 단위사업에 41,918백만원,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1335)” 단위사업에 125,049백만원, “공판활동지원(1337)” 단위사업에 52,612백만원, “검찰청운영인건비(총액)”(7002-101) 세부사업에 883,665백만원, “검찰청운영 기본경비(총액)”(7018-202) 세부사업에 31,524백만원, “검찰청운영 기본경비(7018-252)” 세부사업에 16,297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3) 4조원 중 재해대책비, 인건비, 전염병 대책, 정부조직개편 등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편성된 예비비는 3조 2천억원임